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審査報告書

1994. 3. 16
行政財務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 1994年 2月 26日 區廳長提出
- 나. 回附日字 : 1994年 2月 28日 回附
- 다. 上程日字 : 第23回 永登浦區議會(臨時會)第1次 委員會(1994年 3月 16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財務局長 朴忠會)

가. 提案理由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자치구세 조례 개정

나. 主要骨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중 제17호 제5호, 제24조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 변경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姜性熙)

'93. 6. 11 重機管理法 및 '93. 12. 31 同法 施行令이 全面 改正됨에 따라 關聯 地方稅法施行令 一部 改正으로 因하여 變更된 用語(重機→建設機械)등을 改正 整備하기 위하여 93. 12. 31 市長으로부터 示達된 改正準則(案)에 따라 改正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要請案대로 改正함을 要한다고 思料됨.

4. 審査結果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7
----------	-----

제출년월일 : 1994. 2. 2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치구세 조례 개정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중 제17조 제5호, 제24조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변경

3. 관련법규

중기관리법 시행령 부칙 7조(다른 법령의 개정)

4. 예산조치

별도 예산 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 5 호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19조 제 1 항 본문중 “법 제184조의 3 제 2 항 제 7 호”를 “법 제184조의 3 제 2 항 제 6 호”로 한다.

제24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법 제184조의 2 및 법 제18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중기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5. 건설기계의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현행	개정안
<p>제1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p> <p>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p>	<p>제1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p> <p>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p> <p>.....</p> <p>.....</p> <p>.....</p> <p>.....</p> <p>.....</p> <p>.....</p> <p>.....</p>
<p>제24조(증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증기의 명칭 및 종류·취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용도·취득가격·과세사실발생년월일·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기를 취득한 때 2. 증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증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 증기가 과세 증기로 된 때 5. 과세 증기가 비과세 증기로 된 때 	<p>제24조(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p> <p>..... 건설기계의</p> <p>.....</p> <p>.....</p> <p>.....</p> <p>.....</p> <p>1. 건설기계를</p> <p>2. 건설기계를</p> <p>3. 건설기계를.....</p> <p>.....</p> <p>4.건설기계가.....건설기계로</p> <p>5.건설기계가.....건설기계로</p>